

## 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 요약문

국내 상업대리점영업은 경제상업부에 등기한 자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며, 등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영업할 수 없다. 대리인은 피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령한다. 피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점계약을 종결할 수 없으며, 계약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리점을 폐쇄한다. 대리점과 대리인의 등기는 경제상업부에 신청하며, 경제상업부는 이에 관한 결정을 관할기관에 통지한다. 등기, 변경, 말소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경제상업부는 해당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대리인은 영업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규정과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항목을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상황을 조건,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한 기간 동안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것으로 본다.